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 기사, 특정 품목 운송 화물차주를 추가함으로써 업무상 재해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확대(안 제125조)

택배사업에서 터미널간 택배물품을 운송하는 택배 지·간선기사와 자동차(카캐리어) 또는 곡물(밀가루·사료 등)을 운반하는 특정 품목 운송 화물차주, 물류센터에서 점포로 일반상품 배송·물류센터에서 음식점으로 식자재 배송·물류센터 또는 점포에서 최종 고객에서 주문 상품 배송하는 유통배송기사를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추가하여 이들에게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나.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화물차 및 특수차 운전원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택배사업에서 수송 업무를 하는 사람

제125조제13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운송하는 사람

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밀가루, 곡물 또는 사료를 운송하는 사람

15.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화물차 및 특수차 운전원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제4호, 제6호, 제9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체인사업, 무점포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유통사업자의 상품을 매장·점포 또는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사람
- 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가맹본부 중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음식점업 및 주점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 또는 같은 업종(음식점업 및 주점업을 말한다)의 여러 점포를 직영하는 사업자의 식자재, 식품 등을 가맹점 사업자 또는 직영점에 배송하는 사람
- 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기관 구내식당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식자재, 식품 등을 기관 구내식당에 배송하는 사람

부 칙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5조(특수형 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법 제1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 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25조(특수형 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u>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 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 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 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 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u>	5. <u>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수 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 업을 말한다)에 종사하는 사 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u> 가. <u>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 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 람으로서 택배사업에서 집 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u> 나. <u>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 분류에 따른 화물차 및 특 수차 운전원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택배사업에서 수송 업무를 하는 사람</u>
6. ~ 12. (생 략)	6. ~ 12. (현행과 같음)

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
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
가. ~ 라. (생략)

<신설>

<신설>

14. (생략)

<신설>

13.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
1호 본문에 따른 피견인자
동차 또는 「자동차관리
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자동차관
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운송하는 사람

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
차로 밀가루, 곡물 또는 사
료를 운송하는 사람

14. (현행과 같음)

15.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
류에 따른 화물차 및 특수차
운전원인 사람으로서 고용노
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
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제4호, 제6호, 제9호
에 따른 대규모점포, 준대

규모점포, 체인사업, 무점포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유통사업자의 상품을 매장·점포 또는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사람

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가맹본부 중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음식점업 및 주점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 또는 같은 업종(음식점업 및 주점업을 말한다)의 여러 점포를 직영하는 사업자의 식자재, 식품 등을 가맹점 사업자 또는 직영점에 배송하는 사람

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기관 구내식당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식자재, 식품 등을 기관 구내식당에 배송하는 사람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8838